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경력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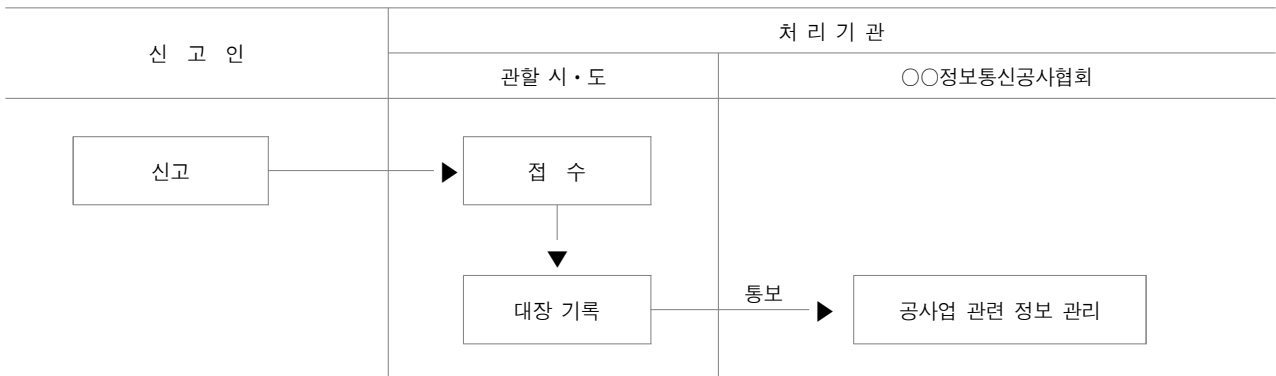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사명 또는 지사 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 증명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	접 수			
	↓			
	대장 기록	통보	공사업 관련 정보 관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 증명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	접 수			
	↓			
	대장 기록	통보	공사업 관련 정보 관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424